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

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안일자 : 2016. 3. 21.

제 189 호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용어를 정리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1조).

나. 정의 조문을 신설하여 제1호에서 새마을지도자의 범위를 기존 새마을부녀 회원,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을 추가하고, 제2호에서 “학생”의 정의를 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” 로 함(안 제1조의2).

다. 지급받는 장학금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함(안 제2조).

라.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2조와 중복된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, 제3항을 신설하여 지도자 및 자녀 1인에게만 지급하고 국가, 공공기관, 기업 및 민간에서 학비보조금 등을 중복으로 받을 시에 지급에서 제외함을 명시함(안 제3조).

- 마. 장학생 추천자를 명확히 함(안 제4조).
- 바.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함(안 제5조).
- 사.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시함(안 제7조).
- 아. 조 제목을 변경 하고, 지급 주체를 구청장으로 하며,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, 구청장이 지급 전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하며 중복 지급 시 환수토록 함(안 제8조).
- 자. “사람에게는”을 “선발된 장학생에게는” 으로, “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현행대로 하며, “~재적학년 정원의”를 “~재적학년 학생 수의”로 “떨어진”을 “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”으로 현행대로 함(안 제8조).
- 차. 조 제목을 “장학재원의 확보”로 하고, “~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 한다”를 “~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” 로 수정함(안 제11조).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1조의2(정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새마을지도자(이하 “지도자”라 한다)”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,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.
- 2.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유공자장학금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 중 사망·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

2.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
3.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추천)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(이하 "구지회장"이라 한다)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.

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선정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.

안 제6조 중 "지도자"를 "새마을지도자"로 한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)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공  
납금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  
다.

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)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중인  
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,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 
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  
수하여야 한다.

안 제9조제1항 중 “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”을 “선발된 장학생에게는”으로  
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도자”를 현행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하며, 제3호 중 “재  
적학년 정원의”를 “재적학년 학생 수의”로 하고, “떨어진”을 “떨어지거나”로 한  
다.

안 제11조 중 조 제목 “(장학기금의 확보)”를 “(장학재원의 확보)”로 하고, “항  
구적으로”를 “지속적으로”로 하고, “이를 반영한다”를 “반영한다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역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)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)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“새마을지도자”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,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.</p> <p>2.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</p>
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장  
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 
장학금, 우등생장학금  
및 특기생장학금으로  
구분한다.

<신 설>

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 
따른 고등학교 또는  
고등기술학교에 다니  
는 새마을지도자의 자  
녀 및 유자녀를 말한  
다.
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 
새마을 장학금(이하  
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 
종류는 다음 각 호와  
같다.

1. 유공자장학금은 새  
마을사업에 공이 있거  
나 새마을사업 중 사  
망·부상을 입은 새마  
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 
학생에게 지급되는 장  
학금

2. 우등생장학금은 품  
행이 단정하고 입학  
또는 재학 중 학과성  
적이 재적학년 학생  
수의 100분의 50 이내  
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 
지급하는 장학금

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(이하 "새마을지도자"라 한다)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새마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"강남구"라 한다)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새마을지도자(이하 "지도자"라 한다)로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.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

3.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
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.

전·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 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.

1. 유공자는 현직 부부 지도자 또는 전·현직 지도자중 새마을사업 시행 중 공사상을 입은 자의 자녀

1. 유공자 장학생은 --  
-----  
-- 지도자로서 ----  
----- 공·  
사상을 입은 사람의  
--

<삭 제>

2.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해당하  
는 사람

<삭 제>

3.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뛰어난 사람

<삭 제>
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, 지방

②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.

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 지도자 강남구 협의회장(이하 "구협의회장"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강남구회장(이하 "구지회장"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

자치단체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를 받는 지도자의 자녀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신 설>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장(이하 "구지회장"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추천)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(이하 "구지회장"이라 한다)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.

제5조(선정) ① 구지회장  
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  
에는 서울특별시 교육  
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  
견을 참작하고 다음 순  
서에 따라 구청장과 협  
의, 심사하여 매 학기  
개시 후 20일 이내에  
선정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장학  
생을 선정할 때에는 가  
급적 중·고등학생을  
각각 50퍼센트 이내로  
안배하고, 중학교는 학  
교 간 평준화가 되도록  
하고, 고등학교는 실업  
계에 중점 배정되도록  
고려하여야 한다.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  
학생은 새마을지도자  
수의 7퍼센트 이내로  
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 
정한다.

제5조(선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다음 순위에 따  
-----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
----- 청장(이하 "구청장"이  
----- 라 한다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--  
----- 지도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선정) ① 서울특별  
시 강남구청장(이하  
"구청장"이라 한다)은  
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 
각 호의 순위에 따라  
구지회장과 협의하여  
매 학기 개시 후 20일  
이내에 선정한다.

1. ~ 4. (개정안과 같  
음)

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-  
----- 새마을지도자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장학금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

제7조(장학금)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-----

제7조(장학금)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)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,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,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

1.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식하여 그만둘 때

2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

3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4. 5. (생략)

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지도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상실-----  
-----

<삭 제>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-----  
-----  
-----떨어진-----  
-----  
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새마을지도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(개정안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재적학년 학생 수의-----  
-----  
-----떨어지거나-----  
-----  
-----

4. 5.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<p>구청장에게 <u>통보하여</u>  <u>야 장학금의 지급을 정</u>  <u>지시켜야 한다.</u></p>	<p>-----<u>통보하여</u>-----  -----  -----.</p>	
<p>제11조(장학기금 확보) 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  율적이고 <u>항구적으로</u>  운영하기 위하여 <u>매년</u>  <u>정규예산에 계산한다.</u></p>	<p>제11조(<u>장학기금 확보</u>) -  -----  -----  -----예산  편성 시 <u>이를 반영한</u>  <u>다.</u></p>	<p>제11조(<u>장학재원의 확보</u>)  -----  ----- <u>지속적으로</u>-----  -----  -----<u>반영한다.</u></p>